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5일 02시 18분



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	3

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

2014.04.17 조회수 872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46
담당부서	건축과
상위법령	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
조례	여수시 건축 조례 제36조
유형	3호 - 기준설정(기준고시 등)
등록사유	주택건축도로
법령공표일	완화규제
존속기한	2013-08-14
규제시행/폐지일	2013-08-14
규제내용	제36조(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) 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. (개정 2013. 8. 14) 1.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.5미터 2.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: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②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(자동차·보행자·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)를 말한다. (개정 2013. 8. 14) ③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(개정 2013. 8. 14) 1.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맞벽 건축하여 동시 시공하는 경우 2.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(높이 3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) 3. 높이 2.5미터 이하의 담장과 높이 4미터 이하의 대문 ④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되는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의 높이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일반주거지역 : 3배 2. 준주거지역 : 4배

목록

이전글

< 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45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08-0048 >

Yeosu Web Contents

